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2.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나이 사용을 홍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滿) 나이로 한다.</u> <u>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한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u>	<u>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u>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9
----------	-------

발의연월일 : 2022. 5. 17.

발 의 자 : 유상범 · 권성동 · 권은희
김기현 · 김미애 · 金炳旭
김상훈 · 김석기 · 김승수
김영식 · 김예지 · 김학용
김형동 · 류성걸 · 박대수
서병수 · 서정숙 · 송언석
유경준 · 유의동 · 윤두현
이용호 · 이태규 · 전주혜
정경희 · 정점식 · 정진석
정희용 · 조경태 · 조태용
최연숙 · 최형두 · 태영호
하영제 의원(34인)

제안이유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관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나.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를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다.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u>기간</u> 의 계산 <u><신 설></u>	제2절 <u>기간 및 나이의 계산</u> <u>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u> <u>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u> <u>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u> <u>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u> <u>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u> <u>나으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u> <u>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u> <u>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u> <u>표시할 수 있다.</u>